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실시 >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2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9.

3. 회부연월일 : 2026. 3.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습 지원 개선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한편, 자칫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적 문제 등을 유발할 위험성 또한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과 소양 강화, 인공지능윤리 의식의 함양,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을 기르는 동시에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며 교육현장이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능력과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능력과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 <u>1.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적 방안</u> <u>2.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융합적 인재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u> <u>3.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건전한 인공지능윤리의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u> <u>4.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수업 등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시설·환경 조성 방안</u>

나. 검토의견

- 인공지능(AI)은 최근 국가와 사회, 산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음. 의료, 복지, 교통, 환경, 행정, 국방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효율성·생산성 향상, 문제 해결, 혁신을 가능케 하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과 생활의 근본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AI 주도권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도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교육부 소관으로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모든 학교에서 AI를 내실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AI 이해·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초학문 및 인문학의 교육·연구 강화를 통해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AI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¹⁾

1)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2025.

인공지능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윤리적 문제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을 기르고 윤리의식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교육부는 AI 중점학교 운영과 AI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학교 정규수업에서 AI 교육을 확대하고, STEAM 클럽 등을 활용하여 방과후 등 정규수업 외에서도 AI 교육 기회를 보장²⁾하는 한편, AI 교육 담당교원의 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연수³⁾를 실시하여 모든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AI를 올바르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2) AI 중점학교: 일반학교보다 정보교과 시수를 확대 편성·운영하고 AI 진로 체험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목표 : '26년 1,000개교 → '27년 1,500개교 → '28년 2,000개교)

AI 교육 체계화 : 학교급별 AI 교육내용을 체계화한 AI 교육운영안 보급('26.2학기), AI 교육·윤리 콘텐츠 개발·보급 등

STEAM(Science·Technology·Engineering·Arts·Mathematics) 클럽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STEAM 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25년 332팀 → '26년 1,540팀)

3) 교육부는 '26.3월까지 AI 교육 담당교원 연수 프레임워크 개발 완료 후 '26.5월부터 연수를 실시하여 '29년까지 1만명의 정보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완료할 예정임.

□ 다만, 최근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2026. 5. 6.)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을 심사할 때에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⁴⁾

문 의 처
02)6788-5188

4) 「교육기본법」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